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3. 22.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564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4.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 나. 상정의결
  -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2.)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양미영)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과 청구인 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 주민감사 청구 가능한 주민의 연령·수 기준 변경(안 제2조)
    -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종전의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
  - 기관 및 기관장 명칭 정비(안 제2조)
    -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수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1.28. ~ 2022.2.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하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p><b>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b> ① 지방자치단체의 <u>19세 이상</u>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u>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u>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p>	<p><b>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b> ① 지방자치단체의 <u>18세 이상</u>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u>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u></p>

<p>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li> <li>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li> <li>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li> </ol>	<p>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li> <li>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li> </ol>
--	---

○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서는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바 제명에서 상급자치단체를 명시하는 것은 자치구가 광역자치단체 영역의 일부이고 특히 광역시 중 ‘중구’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며 다른 조례의 <사례><sup>1)</sup>와 같이 통일된 조문으로 명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은 2022.1.4.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sup>2)</sup>과

1)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300명)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020.1.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sup>3)</sup>에서 감사청구 및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각각 변경하였는 바 주민감사청구도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와 동일하게 연령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임.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의 수도 ‘200명 이상’ 에서 ‘150명 이상’ 로 하향조정한 바 이는 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주민 감사 청구인 수 150명 이상은 법률이 정한 최대 범위로 보이는 바 타 구 <사례><sup>4)</sup>를 참조하여 그 기준이 적절한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3)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4) <사례> 주민감사 청구인 수

전체	100명 이상	150명 이상	200명 이상
	5개 구	10개 구	1개 구
16개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강서구 ※ 적용 오류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4
----------	-----

제출연월일 : 2022. 3.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감사담당관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과 청구인 수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주민감사 청구 가능한 주민의 연령·수 기준 변경(안 제2조)

-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
-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종전의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

다. 기관 및 기관장 명칭 정비(안 제2조)

-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수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2. 1. 28. ~ 22.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19세”를 “18세”로, “200명”을 “150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 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u>강남구</u> <u>와 강남구청장</u>의 권한에 속하는 사 무에 대하여 <u>19세</u> 이상 주민의 연서 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수는 <u>200</u> <u>명</u> 이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21</u> <u>조제1항</u>----- ----- -----.</p> <p>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u>서울특</u> <u>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u> <u>장</u>----- <u>18세</u> ----- ----- <u>150</u> <u>명</u> -----.</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제3항 제1호의 “예상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함

###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행정7급 이다현(02-3423-5153)